

의왕시고시 제2026-13호

의왕도시관리계획(양지편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의왕도시관리계획(양지편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14일
의왕시장

1. 도시관리계획(양지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1) 공원 결정 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7	양지편2호 소공원	소공원	포일동 68-11번지 일원	1,460.0	감) 17.0	1,443.0	경기도 제2005-249호 (2005.8.1)	-

2)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7	양지편2호 소공원	• 면적 변경 A= 1,460.0㎡→1,443.0㎡(감 17.0㎡)	• 분할 측량 결과 반영

※ 상기사항 외에 변경사항 없음

2. 도시관리계획(양지편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도서: 불입(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은 토지이용(<http://www.eu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의왕시청 도시정책과(☎031-345-34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